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09.10

제2판: 2003년 1월 1일

개정6: 2020년 1월

제거작업 요구사항 Clearance requirements

처 장(Director)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유엔 프라자 1, 6층

뉴욕, NY 10017 USA

이메일: mineaction@un.org

전화: +1 (212) 963 0691

팩스: +1 (212) 963 2498

웹사이트: www.mineactionstandards.org

경 고

본 문서는 표지에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는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 또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org>).

저작권 표시

본 유엔문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이며 그 저작권이 유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본 문서 또는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 저장 및 전송할 수 없다(may).

본 문서는 판매할 수 없다.

Director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1 United Nations Plaza 6th Floor

New York, NY 10017

USA

Email: mineaction@un.org

Telephone: +(1212) 963 0691

FAX: +(1212) 963 2498

목 차

목 차	3
머리말	4
해설	5
제거작업 요구사항	6
1. 적용범위	6
2. 참고	6
3. 용어, 정의, 및 약어	6
4. 제거작업 설명서	7
5. 책임	9
5.1. 국가지뢰행동기구	9
5.2. 지뢰제거단체	9
5.3. 모니터링 기관	10
5.4. 검사기관	10
부속서 A 인용(표준)	11
개정 기록	12

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재검토된다.

해 설

토지해제란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및 지뢰제거를 통해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ERW, Explosive Remnants of War)을 식별, 규정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기준은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에 의해 정해야 한다(shall). 제거작업은 그 절차의 최종 단계로, 이상적으로는 비기술조사 및 기술조사로 확인된 위험확인지역(CHA, Confirmed Hazardous Area)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좋다(should).

제거작업의 목적은 토지사용자들에게 토지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특정지역에서 특정한 깊이로 불발 자탄을 포함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을 확인, 제거 및 파괴하는 것이다. 주요목표는 관리자와 지뢰제거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장비를 조달함으로써 지뢰제거 커뮤니티가 적절한 운영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제거와 해제가 끝난 토지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영시스템과 제거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관련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효과적인 신뢰 구축의 역할을 하는 정기적인 브리핑 및 설명을 제거작업 중 받는 것이 좋다(should). 지역사회소통은 토지해제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지뢰위험교육팀 또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지뢰제거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표준은 2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1단계, 품질보증은 지뢰제거 과정 이전과 지뢰제거 과정 중에 지뢰제거단체를 인정 및 모니터링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뢰제거단체들은 효과적인 운영조직을 설립하고, 절차를 개발 및 유지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당 절차들을 실행해야 한다. 관리절차는 투명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제거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는 품질보증 절차의 일부로서 모니터링 되는 것이 좋다(should). 2단계, 품질관리는 지뢰제거 토지가 수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해제되기 전에 이를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품질보증(지뢰제거 이전과 제거 도중) 및 제거 이후의 품질관리를 결합하여 적용하는 것은 토지가 사용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수용할 만한 수준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뢰제거 품질은 국가지뢰행동기구와 혜택을 받는 지역사회 모두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

지뢰가 존재한다고 예상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 국제지뢰행동표준 09.11 전투지역제거(BAC, Battle Area Clearance) 또는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IATG, International Ammunition Technical Guidelines) 11.30 탄약보관소 폭발- 폭발물처리 작업이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제거작업 요구사항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제거’를 토지해제 과정의 일부로 정의하고, 지뢰제거단체가 계약상 의무에 따라 토지를 제거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품질 시스템(즉, 단체, 절차 및 책임)을 설명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09.11은 전투지역제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11.30 탄약 보관소 폭발 - 폭발물처리작업은 의도하지 않은 폭발 후 탄약 비축소 주변 지역의 제거작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참고

인용표준 목록은 부속서A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표준들은 본 표준에 인용되고, 본 표준의 일부 조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약어를 정리한 전체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에 제시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 ‘해야 한다(shall)’, ‘하는 것이 좋다(should)’ 및 ‘할 수 있다(may)’는 준수의 정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표준과 지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 1) ‘해야 한다(shall)’는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2) ‘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선호되는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3) ‘할 수 있다(may)’는 가능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라는 용어는 지뢰행동의 규정, 운영 및 조정을 위한 책임을 가진 폭발물피해국가에서 정부기관, 자주 부처연합위원회를 말한다.

참고: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유엔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일부 또는 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며 적절할 수 있다(may).

‘지뢰제거단체(demining organisation)’란 지뢰제거 프로젝트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 군대, 기업 또는 비정부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어떤 조직이다. 지뢰제거단체는 본부와 지원부서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예하 부서들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기관(monitored body)’이란 국가지뢰행동기구를 대신하여 지뢰제거단체 및 그 예하 부서들의 수행작업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다.

‘검사기관(inspection body)’이란 국가지뢰행동기구를 대신하여 무작위 표본추출 또는 다른 합의된 적절한 검사법을 통해 지뢰제거 사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4. 제거작업 설명서

지뢰제거단체가 특정지역에서 특정 깊이로 모든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불발자탄 포함)의 제거를 보증하면 토지는 ‘제거된 지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shall).

제거해야 할 특정지역은 비기술조사 및 기술조사, 또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타 신뢰 가능한 정보들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shall). 비기술조사는 국제 지뢰행동표준 08.10, 기술조사는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을 참고한다.

참고: 제거작업의 우선순위는 국가기반시설의 우선순위보다는 개별 커뮤니티의 피해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shall).

제거해야 할 특정 깊이는 기술조사 또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의 깊이를 예측하는 기타 신뢰 가능한 정보들을 통해 그리고 토지사용의 목적에 대한 사정(査定)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shall). 지역의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의 깊이에 대한 신뢰 가능한 정보가 없을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는 기본적 깊이 수준의 채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소량의 금속성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속지뢰탐지기를 사용할 때, 기본 깊이는 사용하는 금속탐지기의 탐지능력에 따르는 것이 좋다(should). 독자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최신의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면 지표면에서 130mm 깊이까지 소량의 금속성지뢰의 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본 깊이는 130mm 이상인 것이 좋다(should). 제거작업의 진행에 따라 제거작업에 필요한 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may). 모든 변경사항은 국가지뢰행동기구와 지뢰제거단체 사이에서 합의되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shall).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로 확인 탐지 가능한 깊이 보다 더 깊이 묻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방법 또는 복합적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shall).

지뢰가 제거될 특정지역 및 지뢰제거에 필요한 특정깊이는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지뢰제거단체들에게 현장별 작업명령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작업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may).

- 1) 요청되는 추가 활동, 예를 들면 표지부착
- 2) 사용할 지뢰제거 자원
- 3) 지뢰제거단체의 작업수행에 예상되는 기간
- 4) 제거작업 품질에 대한 추가적 요구사항
- 5) 모니터링 및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

특정지역에서 정해진 깊이까지 모든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제거 및 파괴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하여 보증되어야 한다(shall).

- 6) 인력제거작업, 지뢰탐지전탐, 기계 시스템 및 지역사회소통팀과 같이 운영능력을 갖춘 인정된 지뢰제거단체의 이용. 지뢰제거단체 인정에 관한 지침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30에 포함된다.
- 7) 적절한 경영관행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절차의 적용. 산업안전보건-지뢰제거현장 안전 및 안전거리에 관한 지침은 국제지뢰행동표준10.20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보호장구(PPE)에 대한 정보는 국제지뢰행동표준 10.30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지뢰행동표준 09.30은 폭발물처리(EOD)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11.30 탄약저장소 폭발 - 폭발물처리작업은 탄약 보관소 폭발 후 제거작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8) 지뢰제거단체 및 예하 부서들에 대한 모니터링. 지뢰행동단체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에 제시되어 있다.
- 9) 제거된 토지에 대한 제거 사후검사 수행.

계약서에는 지뢰를 제거할 영역, 제거할 깊이 및 모니터링과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것은 국가지뢰행동기구가 명시하는 것이 좋고(should), 계약서 안에서 합의되는 것이 좋다(should).

참고: 제거 깊이를 정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목적, 제거될 지역에 예상되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 및 기타 환경적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불발 자탄을 포함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은 지면 위에 깔려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면 위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만 제거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may). 지뢰가 없다고 예측되는 경우 국제지뢰행동표준 09.11 전투지역제거를 보라.
- 도시지역의 제거에서는 제거작업 단계의 일부로 여러 미터 깊이의 파편들까지 제거할 수 있다(may).

- 대형 폭탄, 미사일 및 확산탄이 사용된 상황에서는 제거 깊이가 수 미터에 달할 수 있다.
- 사막지역이나 해안지역의 모래를 옮길 때, 원래 10cm 이하의 깊이에 매설되었을 지뢰의 위치를 찾고 파괴하기 위해 1.0m 또는 2.0m 깊이까지 제거할 수 있다(may).

참고: 원래 지뢰가 설치되었을 때에 비해 지반면이 변화되었다면, 요청한 제거 깊이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계약서상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shall).

참고: 기부자 및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제공한 일반적인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지뢰제거단체는 어떤 지역에서의 지뢰제거 과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위임된 곳에서 작업하도록 재정지원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지뢰제거단체는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 토지해제에 규정된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지뢰를 제거하려는 지역과 깊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should).

참고: 지역사회소통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이 남성, 여성, 소년 또는 소녀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요청과 우선순위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지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가 지뢰행동을 반드시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5. 책임

5.1.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다음의 것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제거되어야 할 지역과 제거 깊이를 계약서 및 합의서에 명시
- 2) 제거작업에 적용할 품질보증과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 및 지침을 계약 및 합의서에 명시
- 3) 제거작업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지뢰제거단체들의 인정
- 4) 지뢰제거단체의 작업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공
- 5) 각 위험 지역의 제거 상태를 보여주는 제거지역 및 제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기록부 유지

5.2. 지뢰제거단체

지뢰제거단체는 다음의 것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국가지뢰행동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제거단체로서 활동
- 2)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제거 표준을 적용.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에 제거단체는 국제지뢰행동표준 또는 계약서 및 합의서에 명시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shall).
- 3)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정해진 내용에 따라 제거작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 4) 계약 및 합의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토지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경영관행 및 운영절차의 적용

- 5) 지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그 지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지뢰제거 활동과 공동체의 남성, 여성 및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함.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을 경우, 지뢰제거단체는 추가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shall). 그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6) 제거작업 전, 각 위험 지역에 관한 요구사항에 동의하고 제거하려는 지역 및 깊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화
- 7) 제거 작업 모니터링시스템 수립 및 적용, 그리고 제거된 토지에 대한 사후 검사
- 8)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설립되는 동안에 국가를 도와 제거 품질을 위한 국가표준의 틀 만들기

5.3. 모니터링 기관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의 것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국가지뢰행동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 모니터링 기관으로서 활동
- 2) 지뢰제거단체 및 예하 부서에 대하여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 3) 국가지뢰행동기구에서 정한 대로 모니터링검사 기록의 작성 및 유지

5.4.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다음의 것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국가지뢰행동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 검사기관으로서 활동
- 2) 국제지뢰행동표준 09.20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본추출 절차의 적용
- 3) 국가지뢰행동기구에서 정한 대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유지

부속서 A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문서에는 본 표준의 본문에서 참고하거나 본 표준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인용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인용문서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본 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인용내용에 기반을 둔 협약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열거한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찾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인용날짜가 없는 경우는 표준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되었음을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유효한 현행 국제표준화기구 및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자격을 갖는다.

- 1) IATG 11.30 탄약 보관소폭발 - 폭발물처리작업
- 2)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 3) 국제지뢰행동표준 07.30 지뢰행동단체 인정
- 4)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 지뢰행동단체 모니터링
- 5)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 토지해제
- 6) 국제지뢰행동표준 08.10 비기술조사
- 7)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 기술조사
- 8) 국제지뢰행동표준 09.11 전투지역제거(BAC)
- 9) 국제지뢰행동표준 09.30 폭발물 처리(EOD)
- 10) 국제지뢰행동표준 10.20 산업안전보건-지뢰제거현장 안전
- 11) 국제지뢰행동표준 10.30 개인보호장구(PPE)

본 참고문서들의 최신번역 및 최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가 본 표준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표준의 사본을 보관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 참고자료의 최신 번역 및 판본의 등록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가 관리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웹사이트(<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본을 입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 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 사항
1	2004.12.1	1. 포맷 변경 2. 사소한 글자 변경 3.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이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과 일치하도록 용어, 정의 및 약어의 변경
2	2007.1.24	1. 머리말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의 사소한 변경 및 추가 2. 제4조 ‘제거’의 상세설명에서 품질 부분 삭제 3. 제4조, 업무지시에 관한 새로운 네 번째 절 포함 4. 제5.1조 국가지뢰행동기구에 ‘4)’ 추가 5.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용어 포함 6. 국제지뢰행동표준 전체에서 ‘위협’이라는 용어 삭제
3	2010.3.1	1. 전체적으로 사소한 변경 2. 국가지뢰행동기구 정의 변경 3. 부속서 B 제거 및 제3조의 부속서 B 참조 삭제 4. 토지해제 개념의 통합 및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 08.21, 08.22의 토지해제 참조 포함 5. 확산탄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자탄/확산탄 포함

		6. 성별 및 다양성 문제를 보장-효과 추가 7. UNDP/SEESAC RAMD/S 05.55 인용(표준) 포함
4	2012.8.1	1. IATG 11.30을 해설, 적용범위, 제4항에 포함시키고 부속서 A에 인용(표준)으로 포함 2. 인용(표준)으로서 UNDP/SEESAC RAMD/S 05.55 삭제 3.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개발 영향에 대해 검토 4. 인쇄상 사소한 개정
5	2013.6.1	1. 국제지뢰행동표준 신규 토지해제 영향 검토 2. 제목과 표지에 포함된 개정 번호 3. 해설에 토지해제 용어 업데이트 4. 전반적으로 국제지뢰행동표준 LR, NTS, TS에 대한 참조 업데이트
6	2020.1.29	1. 국제지뢰행동표준 09.20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